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영실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32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위원 위촉시 다양한 사회계층 중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(안제 10조 제5항 제4호)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